

2021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2차 항소위원회 결정문

결정

대상자: 이찬준 선수(로아르)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

주문

본 위원회는 항소자가 제기한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66 이찬준에게 부과된 벌칙을 철회한다.

이유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된 드라이버 라이선스 보유자이다.

2.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의 당시 결정

2021년 11월 7일 열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슈퍼6000클래스를 심의한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는 마지막 랩 19.3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참가자인 #1 정의철과 #66 이찬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경기장에 설치된 CCTV와 대회 중계 영상을 분석하여 대회 스포츠 규정 39조를 근거로 결승 기록 +3초 가산 패널티를 판정하였다.

3. 적용 기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스포츠 규정 제39.1.4조 충돌 유발 행위 규정 적용.

(위반 행위 또는 판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조사가 필요한 사항)

4. 판단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항소자 및 팀 관계자(대리인)의 의견 청취와 사고지점인 용인 스피드웨이 19포스트 오피셜 보고서, 당시 심사 결정문, 잠정 및 공식 기록지, CCTV 영상, 방송 중계 영상, 차량 내부 설치 카메라 영상, 센서로 측정된 차량 조작 데이터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당시 턴 19.3 지점에서의 사고를 살펴보면 대회 심사위원회가 회전 구간에서의 접촉 상황

에 대해 대회 스포츠규정 39.1.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나,

사고 당시 #1과 #66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었고 #66의 조향 조작 데이터가 접촉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취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일반적 레이스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항소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또 #1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은 지점에서 접촉이 이루어져 #66이 경합하는 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확신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고, #66 차량 전면이 아닌 후미가 접촉 부위로 확인되는 등 기타 정황도 본 항소위원회가 당시 사고를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경합 상황으로 판단하게 된 사유를 제공하였다.

다만 본 항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경합 중 순위가 바뀌는 형태의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판정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레이스 흐름과 지점, 접촉 부위,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정황 등에 따라 심사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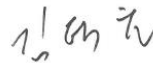
2021년 11월 15일

(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진



위 원 김덕호



위 원 김상덕



위 원 윤철수



위 원 장성국

